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1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1월 19일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경우, 김재형,  
김태호,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추승우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하여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 필요 사항을 마련(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서 이관)하고, 가지조문을 정비하는 등 근거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방법 신설(안 제4조)
- 나.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신설(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제6조와 제7조로 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과 제5조의4는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4조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u></p>
<u>&lt;신 설&gt;</u>	<p><u>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p><u>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u></p>	<p><u>제6조(현행 제4조와 같음)</u></p>

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제7조**(현행 제5조와 같음)

<p>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5조의2</u>(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u>제8조</u>(현행 제5조의2와 같음)</p>
<p><u>제5조의3</u>(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p>	<p><u>제9조</u>(현행 제5조의3과 같음)</p>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

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행 제5조의4와 같음)



<p>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b>제6조</b>(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p>	<p><b>제11조</b>(현행 제6조와 같음)</p>
<p><b>제7조</b>(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p> <p>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p>	<p><b>제12조</b>(현행 제7조와 같음)</p>

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u>제8조</u>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13조</u> (현행 제8조와 같음)